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55
----------	------

발의연월일 : 2016. 11. 21.

발의자 : 박대출 · 홍문종 · 송희경

유민봉 · 정갑윤 · 김정재

임이자 · 염동열 · 김태흠

김규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은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공항 보안 및 안전 분야)’ 감사결과(2016년 9월)에서 입국불허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입국이 불허된 자가 공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부 밀입국 시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국불허자의 경우 일반인과 분리·구별되도록 하고 출국 전까지 송환대기실에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현행법은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민간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외국인을 본국 등으로 송환하기에 앞서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송환대기실을 법적 근거 없이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항 보안 및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송환대기실의 열악한 운영 상황 및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송환대기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6조 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6조(송환의 의무) (생 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제76조(송환의 의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 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 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 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